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. 6. 5 선고 2023가단8662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5. 22.

판 결 선 고 2024. 6. 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620,000원 및 2023. 11. 10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620,000원의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2 청구원인 및 별지 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류지미

별지